#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27

발의연월일: 2024. 11. 7.

발 의 자 : 임이자·김위상·박성훈

조승환 • 조지연 • 송언석

김용태 • 유용원 • 김미애

고동진 · 정동만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생태관광지역 지정 이후 관리·운영 실태 점검 등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및 인센티브 제공 등 환류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운영중이나, 환경성 향상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부재함.

이에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관리·운영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하는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하여 생태관광의 질적향상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41조의3).

또한, 친환경 트렌드의 사회 전반적인 확산으로 여행·관광시에도 친환경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나, 생태관광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제공하는 플랫폼이 부족하여 생태관광 수 요자 등이 관련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국제사회도 문화유산과 환경을 보전하며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불러오는 생태관광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주목하고 있으나, 생태관광의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생태관광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생태관광 국제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1조의4 및 41조의5).

#### 법률 제 호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1조의2(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 관광의 활성화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 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 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생태관광지역에 대해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 ④ 생태관광지역 평가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활

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중인 생태관광 프로 그램 등에 대하여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생 태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 한 경우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 대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생대관광프로그 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

관은 전국의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41조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현황
- 2. 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 현황
- 3. 제41조의3에 따른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현황
- 4. 제41조의2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관리 · 운영 평가 결과
- 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정보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을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 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 제41조의5(생태관광 국제협력)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 생태관광 동향 조사, 생태관광 정책에 관

한 정보의 교류,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생태관광 관련 국제 동향 조사 · 분석 · 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 2.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3. 생태관광 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태관광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사항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41조의2(생태관광지역의 관리
	・운영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생태
	관광지역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
	보를 위하여 생태관광지역의 관
	리・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
	<u>다.</u>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생
	대관광지역에 대해 포상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생태관광지역 평가 항목, 방

### <신 설>

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 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중인 생 태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인증(이 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 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에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운영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 영하지 아니한 경우

- ①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생태관 광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환경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 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41조제1항에 따른 생태관 광지역 현황
- 2. 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 현황
- 3. 제41조의3에 따른 우수생태 관광프로그램 인증 현황
- 4. 제41조의2에 따른 생태관광 지역 관리·운영 평가 결과
- 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정보
-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정보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을 생태관광자원 통합정 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신 설>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생태관광 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 제41조의5(생태관광 국제협력)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국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 생태관광 동향 조사, 생태관광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생태 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국제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 에 따라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태관 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생태관광 관련 국제 동향 조 사·분석·제공 및 공유에 관 한 사항

- 2.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 3. 생태관광 산업의 해외 진출 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태관광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